GAAS :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

회계부정신고 현황 및 조치사례 등 유의사항 안내 (한국공인회계사회)

1. 회계부정신고 현황

■ 최근 5 개년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부정신고 등은 총 202 건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접수되었음

□ 한국공인회계사회, 금융감독원, 금융위원회 및 유관기관(국민권익위원회 등)을 통한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(회계부정신고)

□ 외부감사법 제 22 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의 보고: 외부감사인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부정행위 등 발견 시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(부정행위 등의 보고)

□ 국세청, 금융감독원 등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상장회사 관련 심사·감리가 필요한 경우 이첩(업무정보 송부)

회계부정신고 등 연도별 접수현황

(단위 : 건)

구 분	'22 년	'23 년	'24 년	'25 년	'26.1~7 월	합계(비율)
회계부정신고	15	25	32	38	57	**167**(83%)
부정행위 등의 보고	6	3	9	5	5	**28**(14%)
업무정보 송부	1	1	1	3	1	**7**(3%)
합 계	**22**	**29**	**42**	**46**	**63**	**202**(100%)

■ 포상금 상향('23 년 5 월, '26 년 5 월)과 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'23 년 이후부터 내·외부 고발 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

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,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
ⓒ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. All rights reserve

[심사·감리]

■ 접수된 회계부정신고 등에 대해 회계심사·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총 36 개사이며, 이 중 조치완료된 17 사 중 6 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'고의 및 중과실'로 판단하여 검찰통보·업무정보 송부,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

[회계처리 오류 유형 등]

■ 심사·감리에 착수한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사항은 대부분 매출·재고자산 과대계상 등과 같이 당기손익, 잉여금,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(A 유형)이며, 그 외 특수관계자 거래 및 지급보증 주석오류(C 유형) 등으로 파악됨

심사·감리 착수 회계처리 오류 유형

유형별 구분	건 수*
A. 당기손익, 잉여금,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	**31**
1. 매출채권, 매출 과대(소) 계상	11
2. 재고자산, 매출원가 과대(소) 계상	10
3. 대손충당금 과대(소) 계상	2
4. 충당부채 과대(소) 계상	6
5. 기타손익 과대(소) 계상	2
B. 매출·매입 과대(소) 계상 등	**5**
1. 매출·매입 과대(소)계상	3
2. 유동·비유동항목간 계정재분류	2
C. 주석 미기재	**6**
1.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등	4
2.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	2
(기타) 법규위반(독립성위반)	**1**
합 계	**43**

* 신고 1 건당 회계처리 오류가 2 개 이상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착수 건수보다 오류유형 건 수가 많음

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,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
ⓒ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. All rights reserve

2. 주요 조치사례

(사례 1) 퇴사자에 의한 가공매출 및 재고자산 허위계상 사실 제보
결산 당시 직원이었던 A 는 전임 결산담당자 시절부터 이루어진 분식 회계 관련 업무를 인계받아 문제된 회계처리에 직접 관여하였으나, 퇴사 후 한공회와 국세청·검찰에 해당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음. 검찰은 민원인 제출자료와 피고인(대표이사)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외감법 및 특경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이후 형사재판을 통해 대표이사 혐의가 확정되었음 증선위는 감사인에 대해 주의조치, 회사 및 대표이사, 회계담당임원 및 내부감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함
(사례 2) 퇴사자에 의한 재고자산 허위계상 사실 제보
결산 당시 직원이었던 B는 재직 당시 담당임원의 지시에 따라 분식 회계처리에 관여하였다는 진술과 함께, 재고 중량 및 금액이 조작된 재고자산수불부와 물류관리 프로그램 화면 캡쳐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, 증선위는 감사인에 대해 주의 조치, 회사와 前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검찰통보,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제보자 B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예정에 있음
(사례 3) 국세청 매출채권과 관계사차입금 및 채무면제이익 과대계상 관련 회계부정행위 업무정보
국세청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관계사 C 와 채무면제 합의없이 결산서상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업무정보사항으로 한공회에 통보하였으며, 증선위는 회사 및 대표이사(관계사 C 의 대표이사 겸임)에 대하여 과징금 등의 조치를 부과함 한공회사는 심사에 착수하였고,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고의에 해당하여 감리로 전환하였음. 증선위는 감사인에 대해 과실 감경시 최소조치, 관계사 C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과징금 등의 조치를 부과함

3. 외부감사 유의사항 등 안내

- 신외부감사법('18.11.)에 따라 회계부정신고로 인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비상장회사까지 확대되었고, 최근 포상규정 개정('26.5 월)을 통해 포상금 지급 최고한도가 폐지되고 징수된 과징금의 최대 30%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고 유인이 강화되어 회계부정신고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
- 한공회는 앞으로도 회계부정신고 등에 대해 더욱 철저한 심사·감리를 수행하고,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는 등 회계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

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,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
ⓒ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. All rights reserve

2024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(금융감독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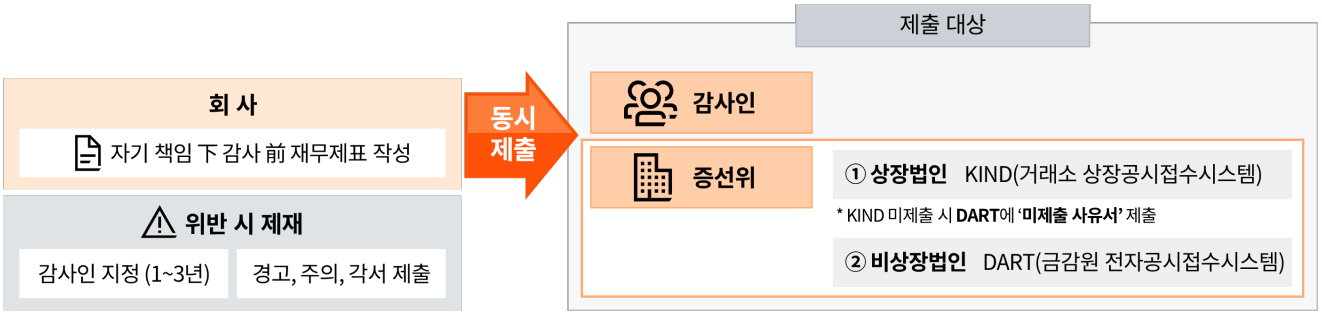
1. 개 요

■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 위반 시 회사는 감사인 지정(최대 3 년), 경고, 주의, 각서 제출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개요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주요 내용</th></tr>
<tr><td>제출의무</td><td>주권상장법인, 대형 비상장법인, 금융회사 등</td></tr>
<tr><td>제출대상</td><td>① 재무상태표, ② (포괄)손익계산서, ③ 자본변동표, ④ 현금흐름표, ⑤ 주석
※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~⑤를 동일하게 제출</td></tr>
<tr><td>제출방식</td><td>▪ 주권상장법인: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(KIND)에 제출
▪ 비상장법인: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)에 제출</td></tr>
<tr><td>제출기한</td><td>▪ 외부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(연결포함) 제출기한(=증선위 제출기한)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일반회사</th><th>회생절차 진행회사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별도(개별)재무제표</td><td>정기주총일 6 주전*</td><td>사업연도 종료 후 45 일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연결
재무제표</td><td>K-IFRS 적용</td><td>정기주총일 4 주전*</td><td>사업연도 종료 후 60 일</td></tr>
<tr><td>K-IFRS 미적용</td><td colspan="2">사업연도 종료 후 90 일
(직전연도 자산 2 조원 이상 &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 일)</td></tr>
</table>
* 단,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 주전(별도) 또는 4 주전(연결)</td></tr>
</table>

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프로세스



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,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
ⓒ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. All rights reserve

2. 감사前 재무제표 점검결과

■ 금융감독원은 2024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점검 결과, 총 76 개사의 위반이 발견되었고, 9 개사는 감사인 지정, 67 개사는 경고·주의 조치되었음

2018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별 조치 내역

(단위 : 사)

회계연도	구 분	감사인지정			경 고	주 의	조치 합계	조치 없음
		3 년	2 년	1 년				
2018	상 장	-	-	12	21	16	49	-
	비상장	-	1	3	24	47	75	-
	합 계	**-**	**1**	**15**	**45**	**63**	**124**	**-**
2019	상 장	-	1	4	13	5	23	1
	비상장	-	-	7	60	115	182	-
	합 계	**-**	**1**	**11**	**73**	**120**	**205**	**1**
2020	상 장	-	3	3	6	9	21	1
	비상장	-	-	10	36	94	140	-
	합 계	-	3	13	42	103	161	1
2021	상 장	-	-	-	27	9	36	1
	비상장	-	-	1	10	18	29	-
	합 계	**-**	**-**	**1**	**37**	**27**	**65**	**1**
2022	상 장	-	-	-	13	11	24	-
	비상장	-	-	7	15	22	44	-
	합 계	**-**	**-**	**7**	**28**	**33**	**68**	**-**
2023	상 장	-	1	2	6	8	17	-
	비상장	-	2	1	11	21	35	-
	합 계	**-**	**3**	**3**	**17**	**29**	**52**	**-**
2024	상 장	1	-	2	18	12	33	-
	비상장	-	1	5	11	26	43	-
	합 계	**1**	**1**	**7**	**29**	**38**	**76**	**-**

■ 담당자의 법규 미숙지, 사실오인 등으로 인해 위반사례가 발생

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,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
ⓒ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. All rights reserve

3. 주요 유의사항 안내

■ 회사 및 회사관계자는 상장 여부, 자산총액 요건 등에 따른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대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여야 함

□ 제출 대상자: 주권상장법인, 금융회사,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(별도 기준)이 5 천억원 이상인 경우

□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,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함

□ 법정제출기한 계산시 초일 불산입 원칙(민법 제 157 조)에 따라 초일(정기주총일)은 불산입하고 역으로 6 주 전, 4 주 전을 계산

위반 사례
✓ **(법규 인식 미비) 자산 5천억원 미만 비상장 금융회사**인 **A사**는 新외부감사법을 숙지하지 못해, **제출 의무**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재무제표를 **미제출**함
✓ **(상장 폐지) B사**는 **상장 폐지** 직후 대형 비상장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아 재무제표를 **미제출**하였으나, **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**으로 **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**에 해당하여 재무제표 **제출 의무**가 **존재**
✓ **(신규 상장) 당해연도**에 **상장**한 **C사**는 직전 사업연도에 상장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**제출의무**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개별재무제표를 **미제출**하였으나, 재무제표 제출의무의 발생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아닌 외감법에 따라 정기총회 6주 전이므로 동 시점에서 상장법인 여부 확인 필요
✓ **(법규 인식 미비) 금융회사**인 **D사**는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, 자산총액 1,000억원 미만 비상장법인이므로 제출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**미제출**
✓ **(기한 계산 착오) J사**는 20××년 3월 30일(화요일)이 정기주주총회일인데, 법정기한(6주 전)인 20××년 2월 15일(월요일)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, **기한 계산 착오**로 20××년 2월 16일(화요일)에 1일 지연하여 제출함
✓ **(정기주총 시기 변경) K사**는 20××년 3월 26일(금요일)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예상하고 제출기한을 2월 11일로 계산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했으나, **정기주주총회**가 **1일 앞서** 3월 25일(목요일)에 개최됨에 따라 **법정기한**(6주 전)을 **1일 초과함**

■ 감사인은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감사前 재무제표와 증선위에 제출한 감사前 재무제표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
■ 감사인은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야 함

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,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
ⓒ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. All rights reserve

추가감사절차	
①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	▪ 회사가 법정 제출기한 내에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**내부통제 미비점의 징후**로 **고려**
②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수정	▪ 회사가 감사前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, 감사인은 조정사항의 적절성 여부와 재무제표 수정이 회사의 적합한 내부통제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
③ 감사인이 발견한 왜곡표시	▪ 회사의 내부통제에 의해 수정되지 않은 왜곡표시를 감사인이 발견한 경우 **내부통제 미비점을 시사**하는지 **평가** ▪ 감사인이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 경우,**중요한 취약점의 강력한 징후로 고려**

4. 향후 계획

■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관련사항을 숙지하고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,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위반 관련 지속적 점검을 통하여 회사의자체적인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강화시켜 회계정보 및 외부감사의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

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,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
ⓒ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. All rights reserve

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(금융감독원)

1. 개 요

■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의 지정기초자료 제출시기(9.1~9.15)에 맞추어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

□ 유튜브(검색어: 금융감독원) 및 기관(*)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및 설명자료를 게시
- 한국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협회, 코넥스협회,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공인회계사회

2. 주요 내용

■ 12 월 결산 상장사(코넥스 제외), 소유·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금년 9.1 일부터 9.15 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

2027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일정(12 월 결산법인)

2026.9.1.	2026.9.15	2026.10.15	2026.10.29	2026.11.12	2026.11.19
지정대상 선정일	지정기초 자료제출 (회사)	**지정감사인 사전통지** (금감원)	사전통지 의견제출 (회사)	**지정감사인 본통지** (금감원)	재지정 요청 (회사)

■ 이번 설명회를 통해 **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, 지정제도 주요내용 및 주요 FAQ** 를 안내할 예정

□ 주기적지정, 직권지정 사유, 구체적인 지정기간 및 방법 등 주요 제도내용과 함께 재지정 요청시 유의사항 등 회사와 감사인의 문의가 빈번했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

■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회계법인은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(http://eacrs.fss.or.kr)을 통해 제출

□ 회사는 과거 6 년간 감사인 선임현황, 소유·경영 미분리 여부,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하고,

□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,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, 손해배상능력 등을 기재하여야 함

3. 향후 계획

■ 회사 및 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하여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

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,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
ⓒ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. All rights reserve